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 현장조치 매뉴얼

안전보건관리규정집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 현장조치 매뉴얼

안전보건관리규정집



목 차

1. 초기대응 매뉴얼

초기대응 매뉴얼의 목적 및 적용대상 재난 유형	4p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4p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6p
초기 대응 보고(지휘) 체계	7p
근무자 별 행동 요령	8p
주요 조치사항	10p
비상신고기관 연락처	14p
대피동선 및 소방시설 배치도	15p

2. 사고 유형별 안전매뉴얼

장애인 상주 시 재난관리 방안	17p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대피 요령	17p
행사 시 안전관리(내·외부)	22p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25p
지진 발생 시	29p
화재 발생 시	30p
정전 시	32p
승강기 고장 시	33p
태풍·폭우·폭설 시	34p
응급환자 발생 시	35p
테러 발생 시	37p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	38p

3. 점검 체크리스트

소방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40p
우기대비 점검 체크리스트	41p
해빙기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42p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

43p

5.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관리규정	53p
단독금지 작업의 분류표	72p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73p
관리감독자(정·부·실무) 지정서(안)	75p



초기대응 매뉴얼의 목적

- 재난발생 시 혼란스러운 초기 대응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신속한 지휘체계를 가동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 도모
- 사고초기 현장상황 실시간 공유 및 공동대응방안 제시
- 공통 적용 가능한 초기대응 원칙 및 기준 마련

적용대상 재난 유형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큰 중대형 재난

<재난규모에 따른 재난 등급>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장관)가 설치되어야 할 정도의 대형 재난 또는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재단에서 발생하거나, 재난발생예고 발령 시 1급 재난으로 규정
- ▶ 시 차원의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수습복구해야하는 재난 발생 시 또는 재난 발생 예고 발령 시 2급 재난으로 규정
- ▶ 재단 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표이사)이 재단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비·수습·복구 명령 시 3급 재난으로 규정·인명사고, 물적피해, 다수의 시민 불편 예상 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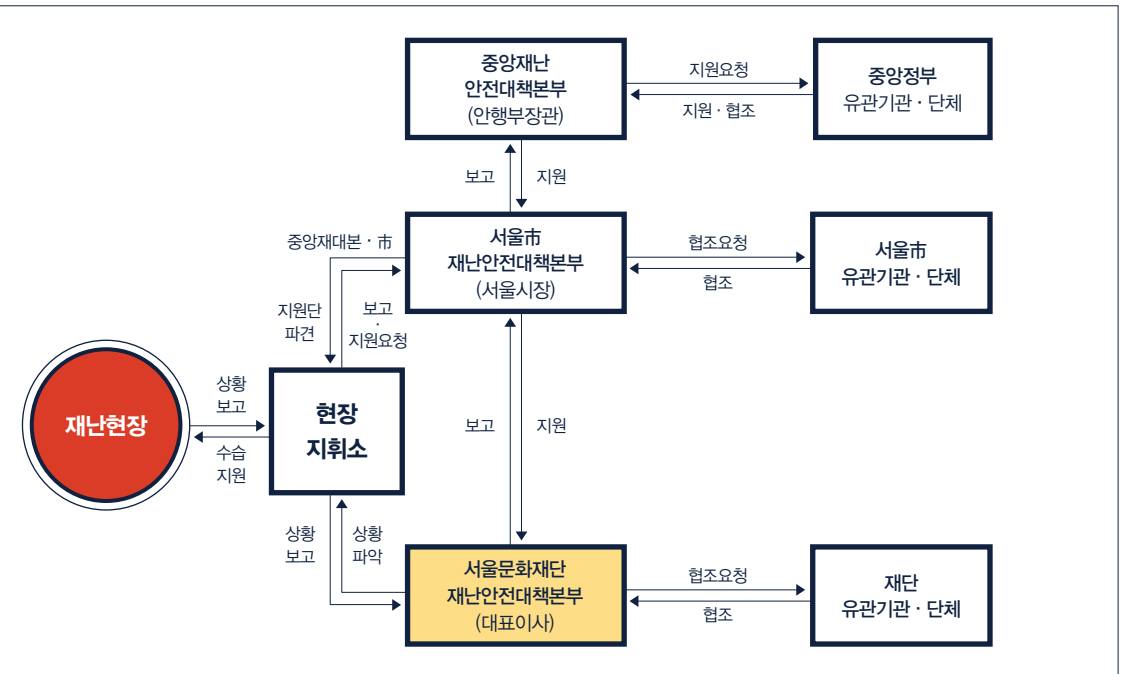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침

- 운영부서** : 경영본부
- 기능** : 재난정보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재난상황 지휘, 재난상황 종합관리 등
- 운영시기**
재난 1, 2, 3등급 규모의 자연, 인적 재해 발생 시
기타 재단 사업장 내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재난재해 발생 시 등
- 운영판단** : 대표이사
- 재난 상황전파 및 수습절차

① 재난 상황접수, 재난 발생 목격신고 ⇒ ② 재난상황 전파, 비상연락(보고) ⇒ ③ 긴급 구조·응급조치요청 ⇒ ④ 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설치운영 ⇒ ⑤ 수습 및 복구 ⇒ ⑥ 지원대책 및 피해보상 등 시행 / 상황종료

재난 상황 발생 시 정보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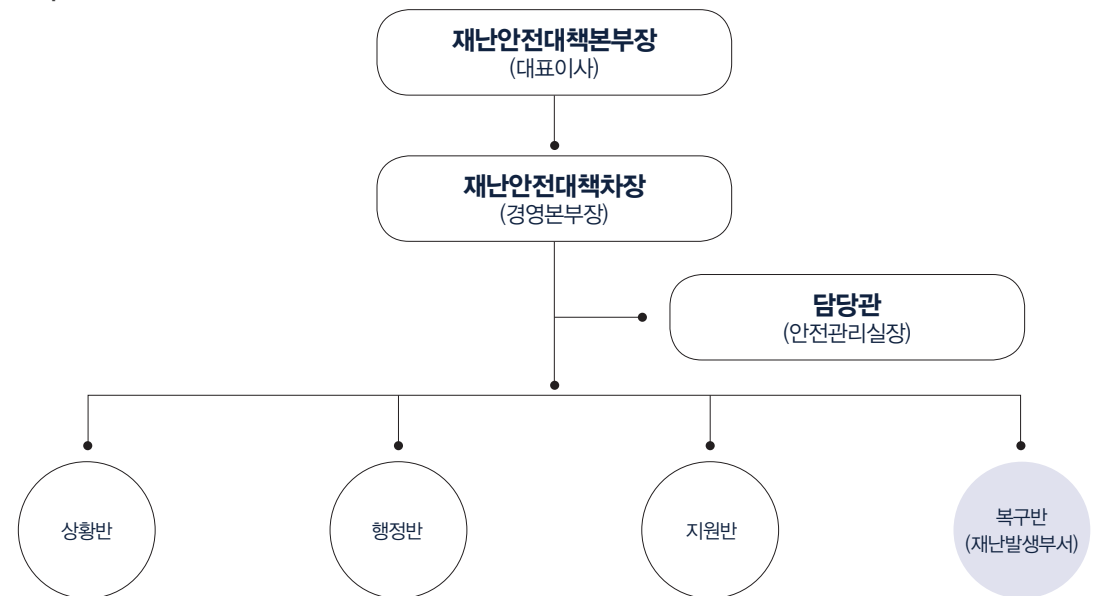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 기본방향

상황반, 행정반, 지원반, 복구반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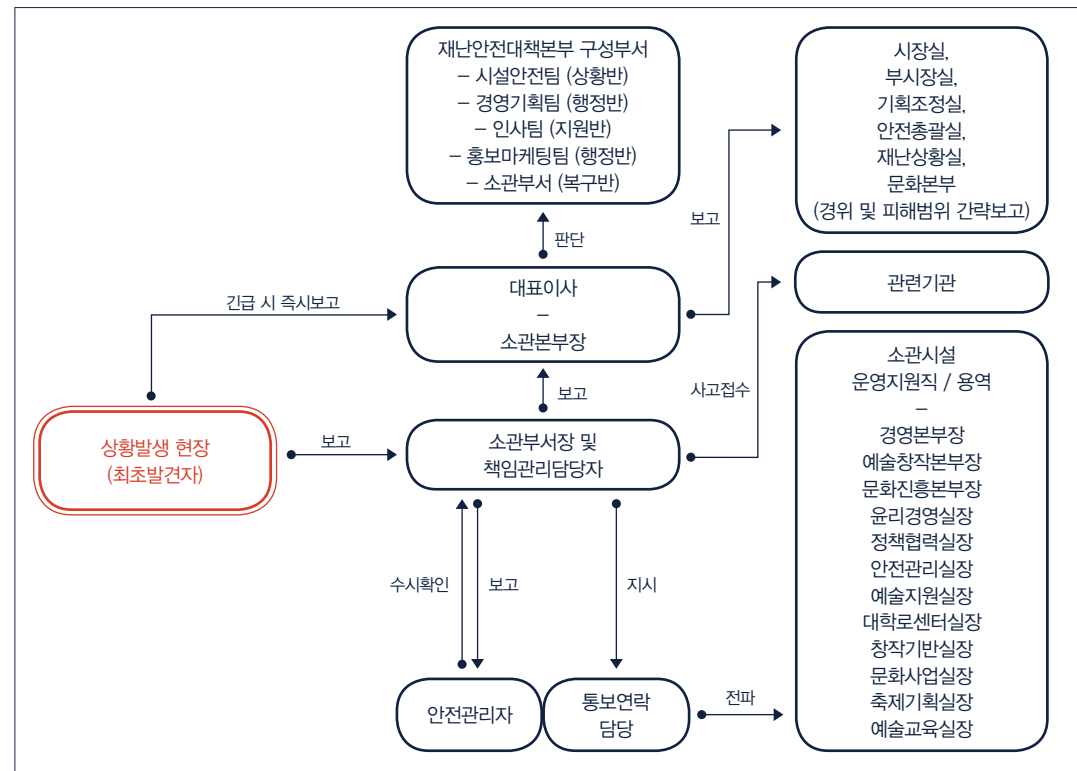
조직도



대책본부 반별 인원 편성 및 주요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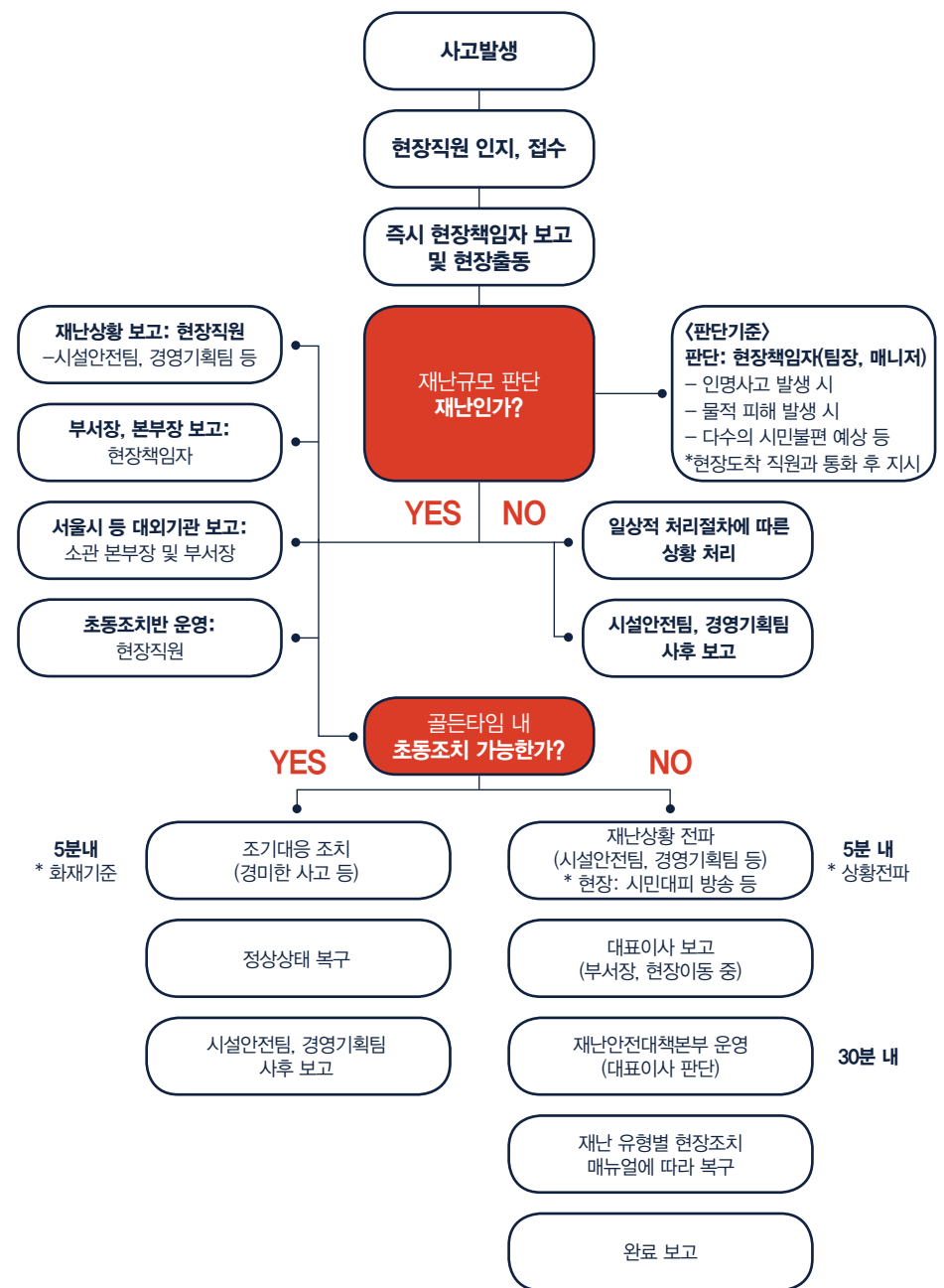
구분	담당 부서	주요임무
본부장	대표이사	·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차장	경영본부장	·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보좌
담당관	안전관리실장	· 재난안전관리 주관
실무반	상황반	시설안전팀 · 대책본부상황실 설치, 관리,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 보고, 전파 및 기록관리 · 재난관리를 위한 현장지휘소 지원 총괄
	행정반	경영기획팀 ·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 피해에 따른 대책 강구 및 보상/배상업무 지원
		홍보마케팅팀 · 보도(해영)자료 제공 및 언론대응 · 재난상황 관련 모니터링, 왜곡정보 대응
	지원반	인사팀 · 재해복구인력에 대한 후생지원 · 사망자에 대한 장례 등 문제처리
	복구반 (현장관할)	재난발생부서 · 재난관리를 위한 응급 복구 실시 · 인원 및 자재, 장비 투입 · 재해, 사고조사 파악 및 종합보고서 작성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초기대응 보고(지휘) 체계

현장책임자 임무 강화, 최초 보고시간 및 골든타임 적용



근무자별 행동 요령

초동조치 가능시

현장근무자

- ① 재난상황 인지 및 신고(119 등)
- ② 현장소장(부서장) 즉시 보고
- ③ 현장 긴급 출동
- ④ 경비원 화재진압장비 지참
현장 출동 지시
- ⑤ 화재진압장비 및 주변 소화장비
사용 긴급진압
- ⑥ 재난상황 완료 보고

경비원

- ① 화재진압장비 지참 현장 출동
- ② 화재진압 활동 지원

현장책임자

- ① 현장 긴급 출동
- ② 현장 근무자와 연락체계 유지
및 초동대처 지시
- ③ 부서장, 본부장 재난상황 보고 - 현장 출동 중
- ④ 상황종료 보고서 작성 및 최종 보고
- 현장 도착 후

재난발생부서

- ① 재난상황 인지 (현장 모니터링 등)
- ② 재난상황 완료보고 (필요 시)

근무자 별 행동 요령

초동조치 불가능시

현장근무자

- ① 재난상황 인지 및 신고(119 등)
- ② 현장소장(부서장) 즉시 보고
- ③ 현장 긴급 출동
- ④ 경비원 화재진압장비 지참
현장 출동 지시
- ⑤ 현장책임자 2차 보고 - 경영기획팀, 시설안전팀
- ⑥ 시민 대피 방송 송출
- ⑦ 소방관 위치 안내 등 협조 및 시민 대피 활동

경비원

- ① 화재진압장비 지참 현장 출동
- ② 시민 대피 활동 지원
- ③ 현장근무자 활동 지원

현장책임자

- ① 현장 긴급 출동
- ② 현장 근무자와 연락체계 유지 및 초동대처 지시
- ③ 부서장, 본부장 재난 상황 (초동조치 불가) 보고
- ④ 연락체계 유지
- ⑤ 현장 지휘 (현장 도착 즉시), 상황전파(이동 중)
- ⑥ 상황종료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재난발생부서

- ① 재난상황 인지 (현장 모니터링 등)
- ② 유관기관 연락 및 지원 협조 요청
- ③ 재난상황 보고
- ④ 재난상황 중간보고

부서장

- ① 현장 긴급 출동 및 이사장 보고
(이동 중)
- ② 연락체계 유지
- ③ 현장 총괄 지휘 (현장도착 즉시),
상황전파 (이동 중)

경영기획본부

- ① 재난상황 전파
(문자 발송 및 SNS 활용 등)
- ② 재난상황 전파 및 중간보고(계속)

주요 조치사항

1.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및 원인, 피해규모, 피해확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파(5분 이내)
 -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받은 사진 등 신속 공유대처

① 재난상황 전파	경영기획본부 <small>* 평상시 본부장, 부서장 등 간부로 구성된 기본적인 연락망을 유지 관리</small>	재난신고접수 시 소관부서 파악 ▼ 본부장 실장 팀장 현장담당자에 연락 ▼ 소관부서장에는 메시지 발송 후 전화상으로 통화하며 현장출동 및 메신저망을 통해 각 부서가 협업하여 대응하도록 안내
② 현장출동	재난소관부서장	신고접수 즉시 재난현장 출발 ▼ 현장이동 중 대표이사, 해당본부장에 전화상으로 보고 ▼ 메신저 등을 통한 연락체계 유지 ▼ 최초인자 및 현장담당자에게 피해규모 등 재난상황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관계만을 보고토록 지시 (현장상황 지속적으로 촬영 전송하도록 지시, 불필요한 추측 배제) ※ 재난소관부서장에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재난현장에 즉시 출동이 곤란할 때에는 재난현장인근에 거주하는 소속직원에게 출동 명하여 초동조치
③ 집단대응체제 구축	재난소관부서장	재난현장 이동 중 메신저 등을 통해 재난 상황 실시간공유 ▼ 개설된 메신저 망 등을 통해 유관부서 간 연락체계 구축

2.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대표이사 출동 여부 결정

신고접수 30분 이내 대표이사 현장출동 여부 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① 현장출동 여부 결정	재난소관부서장	현장이동 중 파악한 재난성격, 피해상황 등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접수 30분 이내) 대표이사 현장출동 여부 결정
② 재난소관부서장의 초동조치	재난소관부서장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피해 확대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 ▼ 유관부서가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공유토록 소속직원에게 지시 ▼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중앙정부나 서울시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지원요청
③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난소관본부장	대표이사에게 재가를 얻어 안전관리 현장조치매뉴얼로 규정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난소관부서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등에 직원을 배치하여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 등 조치
④ 서울시 보고	재난소관본부장	피해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 상황을 서울시에 유선으로 보고 (필요 시 재난소관본부장이 서울시 소관부서 연락)
⑤ 예산조치	재난소관부서장	피해자 등의 의료비, 간병비용, 장례비, 보상금, 복구비용 등을 지급할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 취하기 ▼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등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경영기획팀장과 협의하여 선집행 후 시급한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필요한 절차 사후보완 * 지급주체: 공사장의 경우 시공사, 임대시설물은 소유주 등
⑥ 초기지휘	대표이사	초대형 재난의 경우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직접 현장지휘 및 대책회의 소집 등 초기대응 지휘

3. 대외발표

최초 발표 시에는 대표이사가 사고발생에 따른 유감 표명과 함께 피해자 위로, 구조구난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
 후속발표는 재난소관본부장(필요 시 대표이사)이 진행

①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재난소관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피해자 후송병원 영안실 등에 직원 파견, 병원 별 사상자 현황 등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 • 재난발생 초기 긴급구조시에는 소방 재난본부에서 발표하는 피해 현황으로 일원화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파악 ※ 재난소관부서는 피해현황 파악 시 누락되거나 중복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 필요시 보고받은 자료를 시급한 상황이 수습된 후 문서로 제출토록 요청
② 최초발표	재난안전대책본부	최초발표 시 사고원인, 피해규모, 구조활동상황 및 구조구난 의지 등에 대한 간략한 메시지 표명 ※ 현장확인 전 가급적 답변을 자제하고 현장을 먼저 확인 후 답변
	대표이사	유감 및 피해자 위로 표명, 재난소관본부장 등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등 역할 분담
③ 후속발표문안 정리	재난소관부서장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후속발표문안 최종정리 • 재난상황 요약(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등) 향후전망, 복구 및 지원대책 등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 긴급구조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규모 및 구조상황을 대외발표하는 경우 반드시 “집계시간 현재의 현황”으로서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표명
④ 대외발표 시 협업체계	재난소관부서장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현장브리핑 등으로 재난수습상황을 수시 제공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외발표문안 검토와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언론 동향 파악 및 기자단 안내 등 수행
	재난안전대책본부	언론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언론대응창구를 단일화하고 사건이나 책임회피 및 추측성의 개별적 답변 자제
	재난소관부서	사고원인,사고경위, 피해현황, 유가족 지원,복구현황, 향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4. 후속 조치

사후조치를 위한 대책회의는 시급상황 수습 후 개최
 - 초대형 사고를 제외한 일반 재난현장에서는 가급적 불필요한 회의를 자제하고 상황 공유 및 대처

① 대책회의 개최	재난대책본부 부분부장	시급한 상황 수습 후 재난소관부서, 유관부서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후속대책 심층 논의 ※ 시급상황 수습 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난현장 인근 공간 등에서 개최
	재난소관부서	피해복구 및 피해자 지원등에 필요한 유관부서가 대책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
	재난소관부서장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난소관부서장(피해규모가 큰 경우 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계속 지휘, 대책 회의에는 차상급자가 참석
② 매뉴얼에 따른 임무 수행	유관부서	본부장 책임 하에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임무 수행
③ 기타	법무담당부서	수사기관 조사 시 법적 지원 필요성 검토 등

비상신고기관 연락처 (공간별 비상신고기관 연락처 기입 및 항시 현행화)

화재/전기/가스사고 ▶

교통사고 ▶

누전/감전 등 전기사고 ▶

응급환자안내·상담 및 지도 ▶

재난신고(호우·폭설 등) ▶

방사능 누출 ▶

화학·유독가스, 생화학 테러 ▶

서울시 관련 연락처 ▶

시장실 :

강경민 비서관 02-2133-6021

석도은 비서관 02-2133-6042

부시장실 :

행정1부 고성남 비서관

02-2133-6105

행정2부 송동욱 비서관

02-2133-6139

기획조정실 부혜경 기획조정팀장

010-8792-0033

안전총괄실 주재완 안전기획팀장

010-2334-9338

재난상황실 동향 보고

(disaster@seoul.go.kr)

문화본부 김정은 예술정책팀장

02-2133-2552

대피동선 및 소방시설 배치도 (공간별 대피동선 및 소방시설 배치도 제작 후 항시 현행화)

02

사고 유형별 안전매뉴얼

장애인 상주 시 재난관리 방안

대피계획 준비

- 장애인 상주 위치에 따른 대피공간, 대피통로, 재난 상황 인지 시스템 확인
- 개인 안전 대피 계획, 대피 지원인, 장애유형을 고려한 대피 보조기기 확인
- 대피 지원인과 실제 대피 훈련 실시(대피장비 활용 연습 병행)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대피 요령

장애인 대처 방법

	연번	대처방법	자력 대피	대피 지원조	대피 계획 필요
관 리 자	1	화재발생 시 화재알림 벨을 울린다. (관리자 및 장애인 화재 인지 후 상호 알림벨 작동)	○	○	
	2	탈출구를 우선 개방하여, 전동휠체어 등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3	필요 시 비치된 손전등, 방독마스크 등을 바로 챙긴다.	○	○	○
	4	평상 시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하는 장애인도 가능하면 가슴으로 안거나 끄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시간 내 안전한 구역으로 피난한다.	○	○	○
	5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계단 등에 남아있을 시, 3~4인의 도우미가 있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다.(피난도우미 지정 필요). 다만, 도우미가 적은 경우 안거나 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난한다.	○	○	
	6	화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상 등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침대 또는 시트 등을 이용하여 끌거나 안아 대피한다.		○	○
	7	휠체어 등은 피난통로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계단 등의 주변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	○
	8	각 실별 특히 화장실 등에 장애인이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탈출한다.	○	○	○
장 애 인	1	평상시 외출이나 이동시 휠체어 등을 이용하였지만, 화재나 재난의 경우 가장 빠른시간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출구방향으로 이동한다.	○	○	
	2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즉시 출구로 이동한다.	○	○	
	3	평상 시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하는 장애인일지라도, 이동이 가능하면 휠체어 등이 피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자력으로 피난한다.	○	○	
	4	위기상황의 경우 소지품을 챙기거나 신발을 신는 등의 행동을 자제하고, 최대한 빨리 피난한다.	○	○	
	5	전동휠체어에 탑승 중인 경우, 경사로 또는 계단까지 수평이동 후 관리자의 도움을 기다린다.	○	○	
	6	화재 시 외부 도우미 등에게 자신의 장애정도 및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장애특성표시 목걸이 착용)을 고려한다.		○	

장애인 대피 지원조 편성 (공간별 장애인 대피 지원조 편성 및 항시 현행화)

장애인 대피 지원조

※ 대피지원인은 상황발생 시 미리 약속된 지점에서 장애인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대피 진행
 ※ 대피지원인이 필요한 장애인 직원 또는 입주작가 있을 경우 장애인 1명 당 1조를 미리 지정하여 운영
 ※ 대피지원인이 필요한 직원이나 입주작가가 늘어날 경우 추가 조편성

1조	1조	1조
----	----	----

장애유형별 대피 방법

지체장애인

전동·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휠체어의 충전 상태를 확인 해야하며, 조이스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커버 등을 준비
- 수동휠체어 사용자는 휠체어의 타이어 상태를 항상 확인해두며, 비상용 키트에 휴대용 타이어 펌프를 추가하여 준비

보행장애인

- 보행장애인은 가방형태의 비상용 키트를 준비
- 장애유형, 정도 및 상황여건을 고려하여 수동휠체어의 비치와 필요한 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수동휠체어를 비치하여 대피 시 지원받도록 준비
- 대피 시 층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피난용으로 지정된 엘리베이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경사로를 이용해 대피하도록 하며, 건물에 경사로가 없을 경우 대피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계단으로 대피
-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을 받아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
 - 지원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서 계단 내려가기
 - 수동휠체어로 옮겨 앉아 휠체어로 계단 내려가기
 - 대피용 의자와 같은 피난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계단 내려가기
 -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은 장애유형, 정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선택
- 대피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테라스, 방화구획 등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시각장애인

-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상용 키트에 여분의 흰 지팡이 준비
- 보조견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상용 키트에 보조견의 이름, 훈련소 연락처 등 보조견에 대한 정보와 보조견의 사료 준비
- 저시력 장애인은 안내 사인, 비상등, 비상 조명장치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 및 대피로의 방향 파악
- 중증시각장애인은 점자 지도 등을 이용해 대피로를 파악하고 평소에 대피로를 통해 자주 이동하며 대피로 숙지
- 대피 시 층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지정된 엘리베이터 외에는 사용 자제하고 계단을 통해 대피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위치 확인 필요
- 안내보행의 필요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선택
- 안내보행이 필요한 경우 대피 시 안내보행을 해줄 대피지원인을 요청
- 안내보행을 받을 때를 대비하여, 시각장애인은 대피지원인에게 시각 장애인 안내방법 및 안내 시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설명 후 사전에 훈련 및 숙지
- 장애의 정도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저시력 장애인도 안내보행 필요

- 시각장애인 안내방법
 - 대피지원인이 시각장애인보다 반보 정도 앞에 서서 시각장애인이 지원인의 팔꿈치를 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출입문, 계단 등을 통과할 때는 말로 이를 설명, 대피지원인은 현재 위치 및 상황에 대해 수시로 시각장애인에게 설명
- 안내 시 주의 사항
 -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대피지원인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속도에 맞춰 안내
 - 시각장애인의 보행속도가 느다고 시각장애인을 끌어당기는 것은 자제
 -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테라스, 방화 구획 등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은 비상용 키트에 펜과 종이를 추가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증청각장애인은 보청기용 보조 배터리를 추가
- 청각장애인은 비상상황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경광등, 시각경보기 등 위치를 미리 인지
- 비상상황을 알리는 몸짓이나 한국어 수어를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익히도록 하여 비상상황 시 활용
-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테라스, 방화구획 등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 문자전달식 보조공학기기 시계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호출이나 지시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위급사항 바로 파악 가능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은 비상 키트에 이름, 주소, 비상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가 적힌 개인신상카드 추가
-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상상황임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재경보음, 시각경보기의 점멸 신호, 연기 등이 비상상황을 알리는 신호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하여 교육
- 발달장애인이 비상상황을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평소 교육 실시
- 대피로 바닥이 색상으로 유도된 경우 발달장애인이 대피로의 바닥 색상을 인지하고 비상상황 시 색상을 따라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 지적장애인의 대피지원인은 대피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피방법을 단순화하여 단계적으로 설명

-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폐성 장애인의 대피지원인은 자폐성 장애인과 친숙한 사람으로 지정
-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대피 교육, 훈련, 대피 약속 정하기 과정을 대피 지원인과 함께 준비한다.
- 발달장애인은 단순화 된 건물 배치도를 이용하여 대피로를 익히도록 준비
- 발달장애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길을 대피로로 활용하여 출퇴근
- 대피 시 층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지정된 엘리베이터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교육
-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테라스 방화구획 등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 불이 나면 “불이야!”, 응급상황이면 “도와주세요!” 등 비상상황 시 소리치도록 실전연습 시 반복 교육 실시

행사 시 안전관리

사전 안전사고 대비

- 행사담당 부서는 해당 행사 부서 내 1인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특정하지 않을 경우 책임관리담당자가 역할을 수행)
-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마련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전단지 등 행사 홍보물에 안전관리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 행사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방문객이 즉각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팀장,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전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고 위험가능성 여부 점검, 행사 사용장비의 전기용량 적정 여부 점검,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작동상태 여부 점검, 화재 발생에 대비한 유도등 및 비상조명장치 작동여부 점검 • 비상대피로 표시 및 시민 대피동선 적정 여부 점검, 비상출구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거나 잠겨 있는지 점검
기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철근노출, 못 등으로 인해 행사 시 다칠 위험이 없는지 점검, 시설물(계단 등)의 파손이나 노후로 위험성이 없는지 점검, 행사 중 이동하는 경로에 위험시설 및 장애물이 없는지 점검, 바닥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 점검 • 행사장 외부, 주차공간 및 시민이용공간의 안전관련 시설물을 점검
외부공간 행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상노출 환풍구 등 위험시설에 접근방지 시설이 있는지, 위험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접근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행사 시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부스 등 임시가설 구조물의 안전상태 확인(강풍, 폭우, 폭설에서도 안전한지 확인) • 계단, 울타리 등 부대시설의 파손이나 노후로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 • 조명 및 무대장치 등이 과다한 중량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로 및 관람객 동선 확인 • 옥내소화전, 소화기의 적정 위치, 구비 여부 확인 등

행사 시 사용재료 안전관리

- 행사 중 불, 폭죽 등의 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행사담당자는 담당 팀장(또는 매니저) 보고 후 책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 불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 물건에 번지지 않도록 주위 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 행사에 사용되는 위험성 사용재료(재봉기, 작업공구 등)는 사전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 위험성 사용재료는 다른 참여자가 만질 수 없도록 보관을 철저히 한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 행사장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우 비상구와 행사장 중간에 안전관리 요원(스태프)을 배치한다.
- 안전관리요원(스태프)은 행사 진행부서에서 지정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요원은 행사 중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며, 사고발생 시 시민과 직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따른 대피유도를 실시한다.
- 행사 시 외부 도로 및 출입구 주변은 인파의 밀집현상이 발생하므로, 대피유도의 동선을 넓게 설정하고 대피로가 막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행사 전 비상 시 대피요령 안내

- 행사 전 비상 시 대피요령, 비상대피로 위치, 안전요원의 위치, 긴급 연락 방법 등을 안내한다.

행사 중 안전관리

- 안전요원들을 적절히 배치시켜 행사 중 일어날 수 있는 관람객들의 부적절한 행위(위험물질 투척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을 막는다.
- 행사 중 관람객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 주시하고, 특히 어린 아이를 주의깊게 관찰한다.
- 이동동선 및 대피로에 관람객이 모여 있을 경우 위험상황 시 대피로를 막을 수 있으므로 다른 위치로 안내하여 대피로를 확보한다.

행사 중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 화재, 정전, 시설붕괴, 조명장비 낙하 등의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행사를 중지한다.

- 관람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우선 송출하고, 대피로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관람객을 유도한다.
 - ※ 관객이 동요를 막지 못하면 대피 중 더 큰 부상 및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 담당자 및 안전관리자는 피해규모 등 주변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여 119와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 안전사고 상황에 따라 각 유형별(화재, 정전 등) 안전매뉴얼에 조치를 취한다.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

- 사고 발생 시 방송장비를 활용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참여자 여러분께 사고안내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자 여러분은 시설관리자 및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진행이 중단되었으니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황종료 또는 대피완료까지 지속적 안내 방송 실시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단계별 대응 실시

대응 단계	위기경보 판단 기준	대응 조치	위기경보 수준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대비(행동요령 실천 등) 	-
징후 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 국내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후접수 및 전파 • 감시활동(발생동향 모니터링) 강화 • 방역물자 현황 파악 • 보건교육 강화 	1단계 관심 (Blue)
초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응조직 운영 • 예방 홍보 강화 • 출입통제 • 단체 활동 자제 • 감염병 발생 일일점검 및 동향 보고 	2단계 주의 (Yellow)
비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강화 및 확산방지 • 단체 활동 금지 • 필요시 재택근무/휴무 검토 • 감염병 발생 일일점검 및 동향 보고 	3단계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4단계 심각 (Red)
수습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 활동(발생동향 모니터링) 유지 • 대응 평가 및 복구 	-

단계별 세부내용

예방

-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행동요령을 이행하고, 공간 책임관리담당자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평소에도 손을 자주 씻고,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에 씻는다.
- 컴퓨터(키보드) 사용 후, 작업 후, 흡연 후 등은 반드시 주기적으로(1시간 간격) 손을 씻는다.
-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다녀온 경우에는 회사 복귀 후 바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회사 내 비치되어 있는 손세정기를 자주 사용한다.
-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방지하지 않는다.
- 냉장고에 오래된 조리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 설사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직원은 신속히 가까운 동료에게 전달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 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꼭 사용한다.

-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심한 설사, 발열, 구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다.
 - 감염병 증상이 나타난 직원 부서의 사람들도 같은 증상이 있는지 체온기, 발열감지기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1인 이상이 같은 증상이 보일 경우 의료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의료기관 조치에 따른다.
- 인근 의료기관 비상 연락처 유지 (각 공간 인근 의료기관 및 연락처 항시 현행화)
 -
 -
 - 1339(질병관리본부)

징후감지

징후접수 및 전파

- 질병관리본부 “주간 감염병 동향”(http://cdc.go.kr)을 통하거나, 공문을 통해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사실 인지
- 해외 신종 감염병 유행여부 확인
- 국내외 감염정보 수집 및 서울시 동향 전파

감염병 예방물품(방역물자) 현황 파악

- 담당자가 직접 확인
- (필요 시) 반출에 용이하도록 창고 내 재배치
- 평상시 필수 비축물품 확보
- 유사시 부족자원 동원 대책수립 및 지원, 협조체계 구축
- ※ 의료기관 연락처, 환자 이송체계, 마스크 등 현황 점검

초기대응

비상대응조직 유지

-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

구분	담당	역할
신속대응총괄	경영기획본부장	- 상황 대응 총괄 및 대표이사 상황 보고
시책대응	경영기획팀장	- 서울시 등 지침 시달 시 조치 의뢰, 확진자 등 발생 시 해당 기관 신고 조치
상황대응	시설안전팀	- 본관 및 재단 운영 시설 방역 등 관리 책임 - 의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시설 폐쇄 및 방역소독 조치 - 비상연락망 통해 전 직원 공지
직원(복무)관리	인사팀장	- 의사환자 및 확진자 확인, 확진자 등 결원발생 시 종합적 복무 조치 - 근무관련 특이사항 관리
부서/공간별 조치	각 부서장/매니저	- 부서/공간별 일일보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보고

예방 홍보 강화

- 재단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예방홍보영상 및 예방수칙 게재
- 포스터, X배너, 안내지 등 전 시설 게시 및 비치

출입통제

- 각 시설별 출입구 일원화를 통한 출입자 통제 실시
- 외부인 출입 시 참석자 확인 및 감염병 증상 여부 확인 후 출입 조치
- 상주작가 거주 공간 등 즉시 휴관이 어려운 시설은 방역대책 강화

비상대응

대응강화 및 확산 방지

- 각 공간 방역실시 및 필요 시 손세정제 및 체온계 비치
-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기본 출퇴근시간 10:00 ~ 19:00 으로 변경하여 시차출퇴근제 시행

단체 활동 금지

- 1) 대신민행사 취소 및 연기
 - 행사 취소, 연기 또는 온라인 안내로 변경
 - 취소 불가한 사업 운영 시 방역 철저
 - 방역안내 및 참석자 출입 명단 기록

- 공연장, 연습실 등 대관 취소 시 환불수수료 면제
- 2) 회의 자체 또는 온라인 운영
 - 대외적 행사, 간담회, 설명회 등 연기, 취소 또는 축소 운영
 - 온라인으로 가능한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
 - 부득이한 회의 개최 시 수칙 준수

- 손세정제 사용
- 체온 측정
- 회의 시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 회의 참석 불가 사전 안내
- 참석자 명단 확인

필요 시 재택근무/휴무 검토

- 1) 일반직원 재택근무 교대 실시
 - 필수인원 교대 근무를 통한 기본 기능 유지
 -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서비스 시스템 업무 수행
 - 전화 착신전환을 통한 민원 대응 등 대내외협력 업무 수행
- 2) 직원 휴무 검토
 - 직원의 증상에 따라 공가 또는 병가 처리

구분	복무관리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 완치까지 격리 치료, 해당기간 병가 처리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가 아닌 경우	-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기관장이 소속직원 출근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가 처리 - 같이 거주하는 가족 중 격리자가 있는 경우 확진여부 판정 시 까지 공가 처리, 음성판정 시 정상 출근
의사환자 접촉자	-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조치하고 병가 처리
확진환자 접촉자	- 자가 격리 해제까지 공가 처리

지진 발생 시

사무실 안에 있을 때

- 흔들림 감지 즉시 책상 및 테이블로 몸을 피한다.
- 천정에 냉난방기 등 무거운 물건이 매달린 위치에서는 옆자리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한다.
-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집기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한다.
- 의자 위에 방석 또는 두꺼운 책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출입문 출구 확보

- 각 층 출입문에 가까운 직원은 대피 전 출입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출구 확보 후 즉시 집기 밑으로 몸을 피한다.

옥상 또는 로비에 있을 때

- 로비에서는 안내데스크 밑으로, 옥상에서는 데크 밑으로 재빨리 몸을 피한다.
- 해당 장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고정된 물건 등을 잡거나 몸을 숙이고 손이나 가방 등 드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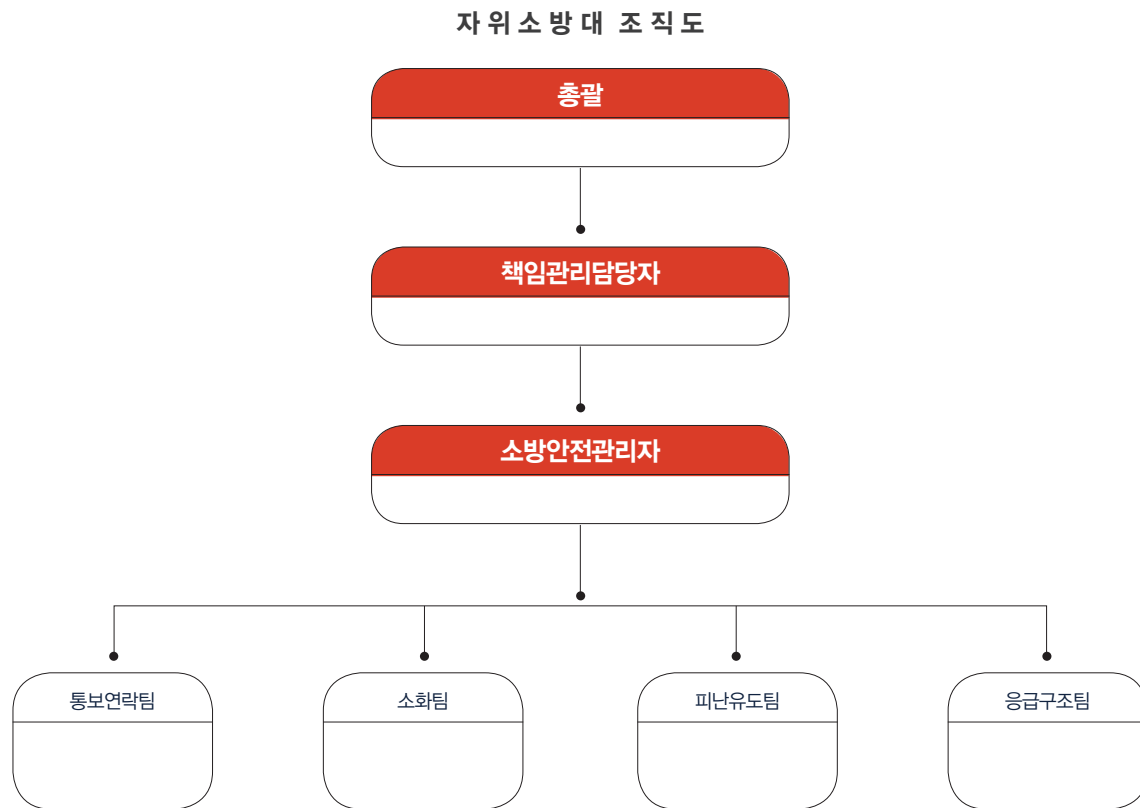
지진이 멈춘 후

- 지진이 멈춘 후 안전책임자(팀장 및 매니저) 또는 책임담당관리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자리를 유지한다.
- 지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종 비상탈출구를 통해 천천히 대피한다.
- 지진이 멈추었다고는 하나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 시 천천히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옆에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위험한 위치가 아니라면 주위에 도움을 알려 기다리고, 만약 옮겨야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 부위를 고정된 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안전관리자는 전기를 차단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부상자 확인 및 화재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속히 연락한다.
- 지진이 지속 반복된다는 정보가 들어올 경우 건물 내 전 직원 및 시민은 인근 대피장소로 이동한다.[대피장소(작성 및 현행화):]

화재 발생 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위소방대 편성

(편성 및 현행화)



화재 발생 시 기본조치

-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라 담당직원 및 관계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 최초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하고 외쳐 주변직원들에게 알린다.
- 최초발견자 및 통보연락팀 직원은 신속히 소방서(119)에 신고한다.
- 공간 내 직원 및 시민 모두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 불이 번지지 않게 비상계단 출입문을 닫는다.
- 무리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때 불을 끈다.
- 대피 시는 입, 코를 물수건으로 막고, 화재 반대 방향으로 빨리 대피한다.
- 낮은 자세로 질서 있게 대피하고, 유독가스에 대비하여 함부로 뛰면 안된다.
- 대피 시 불의 반대 방향을 확인하고 막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통제한다.

안전관리자의 역할

-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라 직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전체를 통제한다.
- 전기로 인한 화재 시 메인 전기를 차단한다.
- 대피로를 확보하여 직원들을 유도하고, 소방서 도착 시 화재장소 및 소화전으로 안내한다.
- 총별 환풍기를 작동시켜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한다.
- 승강기를 1층에 멈추어 놓고 작동되지 않게 한다.

화재초기진화

- 소화기를 통한 초기진화 (초기진화 실패 시 신속히 대피!!!)
 - 1)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함꼐 잡아당긴다.
 - 2) 바람을 등지고 호스는 불이 난 곳을 향하게 한다.
 - 3)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가까이 접근한다.
 - 4) 손잡이를 움켜쥐고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 2차 화재 예측
 - 시설 내 전기개폐기 및 가스밸브 등을 차단하여 2차 연소 원인을 제거한다.

정전 시

정전범위 및 원인 확인

- 시설총괄책임자(팀장 및 매니저)와 책임관리담당자는 정전이 발생되면 즉시 주변을 확인하고 현재 시설만 정전인지, 주변의 일부지역만 정전인지 또는 넓은 지역의 정전인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복전되는지 잠시 동안 기다린다.
-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정전범위 및 원인 등을 파악한다.

전체 지역 정전인 경우

- 책임관리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한 후 양초나 랜턴 등 비상 조명기구를 찾아 켜고.
- 중요장비(서버 등)의 UPS작동 등 비상전원이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장시간 정전이 예상되는 경우 차분하게 직원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자기기는 차단하여 복전 시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시설만 정전된 경우

- 전기안전공사 담당직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전기안전공사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무리한 복구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전기안전공사 담당자 도착 후 지하 1층 전기실의 수배전반을 확인하여 정전의 원인을 찾아낸다.
- 메인 차단기가 내려간 경우 모든 차단기를 OFF시킨 후 하나씩 확인, 작동시켜 이상이 있는 부분을 가려내야 한다.
- 감전우려로 인해 전기안전공사 담당자와 절대 직원들은 차단기 등 전기를 만져서는 안된다.
- 정전이 복구되면 상황을 전파하고 계속 전기실에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본다.

재해 정전 시

- 태풍, 호우, 폭설, 이상고온 등에 의한 자연재해 및 화재에 따른 전력설비 피해 시 발생하는 광역정전이 있으며, 발전소, 변전소 등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전력부족 및 전력수요 급등으로 인한 예비전력 부족 시 발생하는 광역정전이 있다.
- 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단체에서 전력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에 의해 조치하므로 총괄상황반 및 한국전력공사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승강기 고장 시

승강기 이용중 정지될 경우

- 정전 및 고장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연락한다.
- 승강기 내 인터폰은 정면 및 우측 노란색 버튼이 2개 있다.
- 정전이 되어 승강기가 정지된 경우에도 인터폰(노란색 버튼)은 비상조명이 작동되므로 침착하게 행동 및 연락을 취한다.
- 버튼을 누르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로비 안내데스크로 연락이 된다.
- 인터폰으로 상황 설명 및 구조를 요청한다.
-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 구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승강기 재작동시 진동이 클수 있으므로 승강기내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는다.
-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는다.

승강기 안전예방

-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한다.
-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턱에 이물질이 끼거나 틈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 도어개폐기 출입문에 기대면 손이나 옷자락이 딸려 들어가므로 조심해야 한다.
-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승강기 안에 갇히면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의 구조를 받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다.

승강기 고장시 안전관리자의 역할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고장 및 긴급출동을 요청한다.
- 고장 시 직원 및 시민이 타고 있는 경우 전화 및 인터폰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한다.
- 정전으로 인한 고장일 경우 정전복구 즉시 승강기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태풍 · 폭우 · 폭설 시

기상특보별 상황관리

- 호우주의보/경보: 12시간 강우량 100mm 이상 또는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을 시 야간에는 총괄책임자 또는 책임관리담당자 1인 비상근무
- 태풍주의보/경보: 주간에는 지속적으로 건물 내 취약지점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총괄책임자 또는 책임관리담당자 1인 비상근무
- 예측치 못한 집중호우 및 강풍 시 대책 본부장 명에 의해 24시간 비상근무

태풍 · 폭우·폭설 시 직원 행동요령

- 주위의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건물 안에 있도록 한다.
- 창문을 닫아도 흔들릴 경우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기기는 만지지 않는다.
- 누수 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즉시 책임관리 담당자에게 알린다.
- 옥상 및 기타 외부 공간 이용을 삼간다.
- 태풍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해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미리 제거한다.

태풍 · 폭우·폭설 시 안전관리자 역할

- 정보매체를 통한 날씨 정보를 계속 주시한다.
- 내/외부를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출입문, 외부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한다.
-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구입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폭설을 대비한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한다.
- 폭설 시 주차장 및 옥상은 30cm이상 눈이 쌓이면 눈을 수시로 치워준다.
- 태풍, 폭우로 인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시설기사와 함께 복구작업을 진행한다.
- 즉각적인 보수가 어려울 경우 대책위원장(경영기획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 업체에 연락하여 수습대책을 강구한다.
- 건축물의 구조적인 변형 등 불안정한 요소가 보일 경우 즉각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지속될 경우 대책본부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직원 및 시민을 대피시킨다.

응급환자 발생 시

갑작스런 졸도, 심장마비 등 호흡곤란 발생 시

- 직원 및 방문하는 시민들이 갑작스런 졸도, 심장마비 등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다음 5개의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일명 '생존사슬'이라 한다.
- 최초 목격자 직원은 119 및 인근병원()에 즉시 환자발생 신고를 한다.
- 최초 목격자가 응급처치 방법을 모를 경우 주변 직원들에게 도움을 알려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5개의 응급처치

첫번째 사슬: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정지를 인지하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음을 119에 신고한다.

두번째 사슬: 신속한 심폐소생술 – 심정지 목격자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세번째 사슬: 신속한 제세동 –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나 119 구급차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세동 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네번째 사슬: 효과적 전문소생술 – 심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에 의료진에 의한 효과적인 전문소생술이 시행된다.

다섯 번째 사슬: 심정지 후 통합치료 –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된 뒤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저체온 치료, 관상동맥중재술 등의 통합적인 중환자 치료가 시행된다.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전문소생술 심정지 후 통합치료

- 즉,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생존사슬'이 즉시, 그리고 쉽 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 중에서 '효과적 전문소생술', '통합적 심정지 후 치료'를 제외한 앞의 3가지 사슬은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근무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심정지 확인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 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심정지-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도움 및 119 신청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



가슴압박 30회 시행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2회 시행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 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회복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테러 발생 시

사전 예방 활동

- 의심스러운 사람 혹은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신고
 신고 : 국가정보원111 / 경찰112 / 소방119
- 거동 수상자의 건물 내부 진입 시 지속적 미행 감시
 (시설반장, 경비반장 등 교육)
- 폭발물의 은닉 가능성이 높은 구역 및 장소는 규칙적으로 지속점검 실시
 (점검자: 책임관리담당자, 시설반장, 경비반장)
- ※ 주요 점검 장소
 쓰레기통, 화장실, 청소도구함, 전기실, 기계실, 계단통로, 서버실 등

폭발을 발견 시

- 폭발을 발견 시 현장에 있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면서 대피
- 관계기관(국가정보원111 / 경찰112 / 소방119) 즉시 신고
- 대피 시는 승강기를 절대 이용하지 말고, 좌측통행을 통해서 계단의 한쪽만 사용하여 대피(나머지 한쪽 계단은 폭발물 처리팀이나 소방관들의 진입)
- 금지사항

- | | | |
|------------------|---------------|---------------------|
| ① 만지거나 | ② 담배를 피우거나 | ③ 움직이거나 |
| ④ 열에 노출시키거나 | ⑤ 개봉하거나 | ⑥ 물로 적시거나 |
| ⑦ 전선이나 인계 선을 끊거나 | ⑧ 노출된 선을 당기거나 | ⑨ 가연성 물질을 옆에 두지 말 것 |

- 책임관리담당자 및 대피팀은 직원 및 시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킨 후 관계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접근통제 및 현장보존

화학물질이 유포된 경우

- 머플러, 마스크, 목도리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서 빠져나옴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신속히 대피
- 빠져나와 오염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맑은 공기로 천천히 호흡을 하고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음

0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

사제폭발물 이용 우편물테러

- 작동원리: 편지 또는 소포 개봉 시 내장된 폭발물이 자동으로 폭발되도록 설계
- 식별요령

- 건전지, 전선, 딱딱한 내용물이 동봉된 우편물
- 테이프나 끈으로 과도하게 포장된 우편물 또는 전선줄, 안테나 등이 빠져나와 있는 우편물
- 중앙부분이 유난히 두껍고 딱딱하거나, 포장이 밖으로 나온 우편물
-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편물

화생발물질 이용 우편물테러

- 작동원리 : 편지 또는 소포에 유독성 화학물질 · 탄저균 · 방사성물질 등을 은닉, 개봉시 자동 살포
- 식별요령

- 겉면에 기름얼룩, 탄 자국, 분말이 묻어있거나, 포장이 변색되어 있는 우편물
- 말랑말랑하여 가루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
- 특이한 냄새가 나거나, 만졌을 때 눈이 따가운 우편물
- 유리병, 캔 등 유독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동봉된 우편물
- 만졌을 때 주위보다 뜨거운 열기가 감지되는 우편물

적발 시 대처요령

- 의심우편물 발견 시
 - 절대로 개봉하거나 옮기지 말고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 의심우편물 발견 즉시 책임담당자에게 발견 신고를 한다.
 -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련기관(테러정보통합센터, 119, 서울시 재난대응과)에 의심우편물 발견 신고한다.
 - 던지거나 흔드는 등 충격을 주지 않는다.
 - 라이터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외부로 노출된 얇은 줄이나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자르지 않는다.
 - 발견자 및 안전담당자는 의심우편물 주변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한다.
- 의심우편물 개봉 시
 - 실수로 우편물을 개봉한 경우, 침착하게 다음의 행동을 취한다.**
 -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우편물 개봉장소를 즉시 떠나 안전한 곳으로 전체 대피한다.
 - 책임관리담당자 및 발견자는 관련기관(111, 112, 119등)에 신고한다.
 - 전문가가 도착하여 확인할 때까지 의심우편물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 있다.

**점검
체크리스트**

**소방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공간명:
점검일:
점검자:

구분	주요내용	정상여부 (O/X)	비고	
소화기구 점검	각 공간별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가?			
	소화기 표지는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가?			
	소화기의 사용 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는가?(10년)			
	소화전의 표시등은 항상 켜져 있는가?			
	소화전의 소화호스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가?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는 적치물 등이 있지 않은가?			
	비상대피로 점검	피난유도등은 잘 작동하는가?		
		비상대피로에 적재물로 방해되지 않는가?		
비상조명등(손전등)이 정상 작동하는가?				
비상대피로나 옥상 비상구가 잠금장치로 잠겨있지 않은가?				
비상대피로 안내물은 잘 비치되어 있는가?				
이용자 수칙 관련	개인 전열기구 및 화기 이용실태와 관리 상태는 잘 파악되어 있는가?			
	이용자 퇴실 시 전열기구 및 화기 관리는 적절한가?			
	흡연구역 내 방화관리가 적절한가?			

**우기대비
점검 체크리스트**

공간명:
점검일:
점검자:

	점검사항	이상 유 / 무	비고
외부시설	벽체 균열 및 물 막힘 상태		
	배수로 배수 상태		
	고정 시설물 부착상태		
	화단 경계석 및 보도블럭 상태		
	울타리 침하 여부		
	건물 외부 마감재 상태		
	난간/핸드레일 지지상태		
	도로 침하/유실 상태		
	조경재 교목 등 지주목 점검상태		
내부시설	벤치, 파고라(그늘막) 등 시설물 상태		
	배관 및 연결부 등 누수여부		
	공간별 누수 여부		
	냉·난방기 배관 누수 여부		
	각 출입문 작동상태		
	타일 및 마감상태		
	벽체 및 바닥재 부착상태		
전기시설	창호 개폐 상태		
	지하층 공간 침수 여부		
	배전반의 접지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기타시설	배선 등 절연피복의 파손 여부		
	옥외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여부		
	펜스 및 옥외 설치물 상태(강풍 대비)		
	기타 특이사항		

해빙기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공간명:
점검일: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계획
		O/X	내용 (위치, 상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멍 막힘 발생 여부			
부등 침하	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주변지반 부분 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발생 여부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주변 융기, 중앙처짐) 등 발생 여부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 콘 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보에 결함 발생 여부 (단부 사인장균열, 중앙부 휨균열)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윤(결로) 등의 현상 발생 여부				
철재 부식 발생 여부				
기타 결함사항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건축물의 기초부위로 빗물 유입 여부				
담장의 전도징후 여부				
외장재(치장벽돌, 모르터 등)와 돌출물(간판, 안테나 등)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빗물 흡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 이상 유무				
수도, 가스, 전기, 통신선로의 이상 유무				
배수펌프 작동상태 불량 여부				

여름철(폭염,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공간명:
점검일: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O)/불량(X)	조치 계획 (조치내용, 일정 등)
일반사항	재난 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O	
	폭염, 태풍, 호우 시 행동요령 숙지 여부	O	
외부 점검사항	건물 외부마감재, 유리 등의 마감상태	O	
	건물 주변 및 옥상 배수로 청소 상태	X	배수로 침전물 청소 시행 (06.03)
	옥외 설치물(간판, 현수막, 파고라 등) 부착상태	X	현수막 제거 예정 (06.08)
	분리수거장 쓰레기의 비산 우려 여부	X	수거 완료 (05.31)
	화단경계석, 보도, 도로 침하/유실 등의 상태	O	
	지하층 침수 우려 여부	해당없음	
	수방자재(우비, 장화, 모래주머니 등) 확보 여부	O	
내부 점검사항	공간별 누수 발생 여부	O	
	집수정 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		
	창호 개폐 상태		
	냉난방기 정상작동 여부		
	CCTV 정상작동(녹화) 여부		
전기설비 점검사항	배전반 접지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배선 등 절연피복의 파손 여부		
	옥외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여부		

**용접(용단)
작업 체크리스트**

공간명:
점검일:
점검자:

가스 용접 · 용단 작업표 (점검 체크리스트)

평가문항	점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각종 호스와 취관은 손상 · 마모가 없는가?				
호스밴드 및 호스클립의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작업 시 불반이포를 사용하는가?				
작업장 주변에 인화성 · 가연성 물질은 제거하였는가?				
작업 중 토치부가 호스에 접근하지 않는가?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콕을 잠그는가?				
가스조절 밸브는 서서히 조작하는가?				
작업장소 주변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였는가?				
고압용기의 넘어짐 방지조치는 양호한가?				
작업자는 보안면 및 방진바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전기용접 작업 점검표 (점검 체크리스트)

평가문항	점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자동전격방지기는 부착되어 있는가?				
용접봉 홀더의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클램프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케이블(전선)의 용접기와 접속부의 부착, 절연상태는 좋은가?				
케이블(전선)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케이블(전선)은 전류용량에 적합한가?				
용접기 본체에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작업장 부근에 기름, 나무조각, 도료, 형궤 등의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았는가?				
물기 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가?				
앞치마, 보안경, 보안면, 방진방독검용마스크(1급 방진필터)를 착용하고 있는가?				

**소화설비
점검표**

공간명:
점검일:
점검자:

평가문항	점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소화설비의 비치 장소는 알고 있는가?				
소화설비의 사용 방법은 알고 있는가?				
소화기, 소방호스, 소화전은 정상으로 작동하는가?				
경보장치의 위치와 사용방법은 알고 있는가?				
화기 사용 후 반드시 소화 상태를 확인하는가?				
기름이 묻은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가?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용 공구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가?				
화재종류별 적용소화기를 배치 및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는가?				
용접 · 용단 등 화기작업 장소에 이동식 소화설비를 비치하는가?				
이동식 소화기 충전 약재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환하는가?				

**도장작업
체크리스트**

공간명:
점검일:
점검자:



**중대재해
처벌법**

평가문항	점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작업대는 전도위험이 없는가?				
호스라인의 손상 유무를 확인 후 작업하는가?				
작업 중 이동 시 건(Gun) 잠금, 개인호스 정리, 장애물 확인 등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작업하는가?				
밀폐탱크 작업 시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는가?				
작업 시 방폭형 조명등을 사용하는가?				
도료와 용제는 사용 후 밀폐하여 지정장소에 규정대로 보관하는가?				
고소차 및 지게차 운전 시 규정된 수칙을 준수하는가?				
도장작업 중인 블록 내에서 화기작업은 사전에 금지조치를 하며 환기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작업자는 유해 인자 종류와 유해성을 알고 있는가?				
공기정화요 필터는 적정시기에 교체하는가?				
휴식은 격리된 곳에서 실시하는가?				
밀폐구역 도장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절차서를 사용하여 점검 후 실시하는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작업할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는가?				
건의 안전핀을 채우고 이동을 하는가?				
에어레스 펌프의 소음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작업 전에는 호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가?				
에어레스 펌프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가?				
건과 팁 분해/조립 시에는 공기압력을 차단 또는 제거 후 안전핀을 잠그고 작업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이 법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 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중대재해 처벌법은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서울문화재단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 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란?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어떤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이 있을까?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계획 수립·이행
- 추진개요(안전관리 대상, 조직 및 인력, 예산)
- 안전관리 세부계획(점검, 유지관리, 교육 등)
- 시민재해 관리 계획(비상조치 등)
-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필요한 인력 확보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유지관리
- 이행점검, 개선조치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 안전법 등 관계 법령 의무사항 준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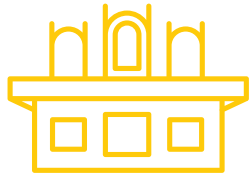
안전보건조직의 구성과 임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	자격	주요 업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별도 자격요건 X)	• 다음 각 호의 업무 총괄·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별도 자격요건 X)	• 다음 각 호의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적 자격요건 필요)	• 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단 적용 시설은?

- **법률개요 : 법률 제2조, 시행령 제3조**
 -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중대시민재해) : 법 제2조 가목, 나목, 라목 / 시행령 제3조 4호
 - 가목 : 실내공기질법 /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기타 생략
 - 나목 : 시설물안전법 / 1,2,3종 시설물
 - 라목 : 기타 준하는 시설 ⇒ 시행령 제3조 4호 확인 결과 재단 미해당
 - **단 적용대상시설물**
 - (중대산업재해) : 재단 전공간(17개 공간) ※잠실 제외 시 16개 공간
 - (중대시민재해) : 6개 공간(3개 공간 검토중)
- ※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 모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이행 공통 의무사항은 동일
- 재단공간 적용 현황(건축물대장, 연면적, 건축법 및 시행령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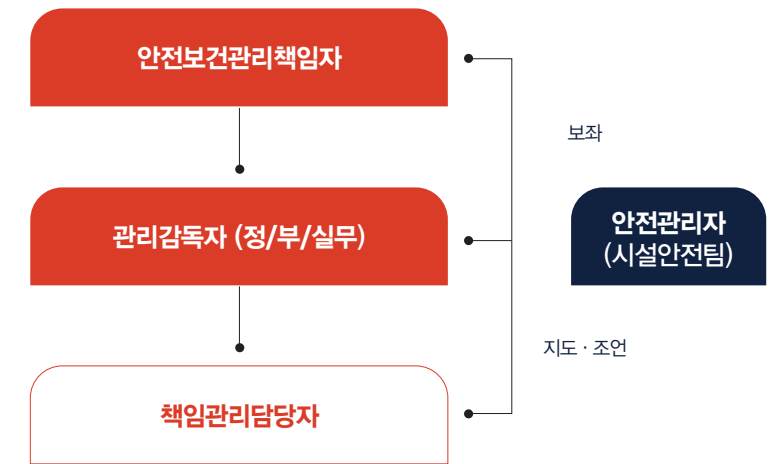
연번	공간명	연면적	건축물대상상 용도	관리본부	건물주체	중대재해적용 관련	
						적용	법률
1	서울문화재단 본관 '05.12.29	2,367.41㎡	업무시설 외1 (문화및집회)	경영본부	재단 소유	중대시민 중대산업	가목 복합건축물
2	금천예술공장 '09.10.07.	3,070㎡	교육연구시설	예술창작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산업	
3	신당창작아케이드 '09.10.16	1,389.47㎡		예술창작본부	시설관리공단 민간 임대차	중대산업	
4	연희문학창작촌 '09.11.5	1,480.15㎡	주택, 사택	예술창작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산업	
5	문래예술공장 '10.1.28	2,832㎡	교육연구시설	예술창작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산업	
6	서울무용센터 '11.05.11	2,044.14㎡	교육연구시설	예술창작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산업	
7	서교예술실험센터 '09.6.19	551.56㎡	근린공공시설	예술창작본부	마포구청 소유	중대산업	
8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15.4.24	5,060.81㎡	교육연구시설, 취수장	문화진흥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시민 중대산업	가목 복합건축물
9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6.10.08	1,190.17㎡	교육연구시설	문화진흥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산업	
10	시민청 '13.01.12	8,150㎡	시민참여 소통 공간	문화진흥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시민 중대산업	가목 복합건축물
11	삼일로창고극장 '18.06.22	417.03㎡	공연시설	예술창작본부	민간 소유 임차	중대산업	
12	청년예술청 '20.08.21.	1,877㎡	다목적공간	예술창작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산업	
13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20.11.05	2,949.07㎡	다목적홀, 영상편집실, 녹음실, 라운지 등	문화진흥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시민 중대산업	가목 복합건축물
14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2021.06.30)	7,590㎡	문화및집회시설	경영본부, 예술창작본부, 문화진흥본부	재단 소유	중대시민 중대산업	나목 시설물안전법
1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22.06.10	2,976.36㎡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예술창작본부	민간 소유 임차	중대시민 중대산업	가목 복합건축물
16	서울연극센터 '22.11.18	942.61㎡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예술창작본부	서울시 소유	중대시민 중대산업	
17	공연기자재플랫폼 '23.03.23.	25,104.34㎡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예술창작본부	민간 소유 임차	중대시민 중대산업	가목 복합건축물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단 추진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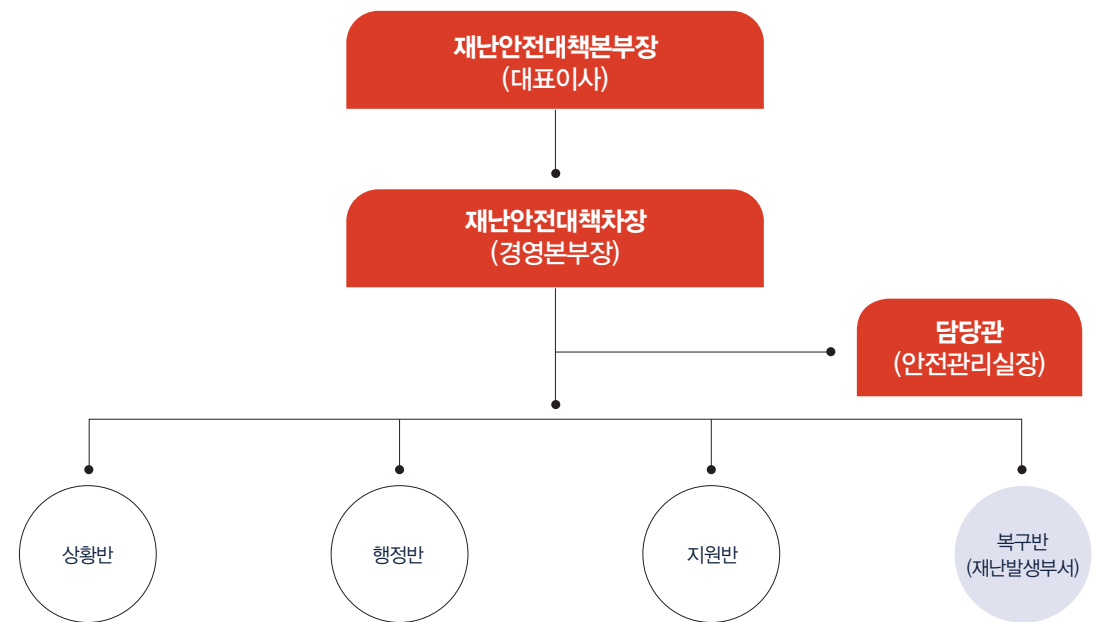
※ 세부 내용은 '23년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참고



- **재단 안전경영 목표 설정 및 선포**
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안전경영 목표를 구축하고,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개선 노력을 선포하여 전 직원이 안전보건 확보에 참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평상 시와 비상 시로 나누어 안전 조직 구축 및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도모
- 평상 시 안전 조직 구성



- 비상 대응이 필요한 재난/중대재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간(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용산예술교육 센터, 본관, 대학로, 공연기자재플랫폼)은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간 내 시민재해 발생 예방

- 시설 내 안전 조직, 유해위험요소 점검 계획 등을 포함하여 년 단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 내 사업(행사, 전시 등)의 계획 수립 시 안전 조직, 비상대처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행사 간 중대시 민재해 발생 예방
- 시설안전팀에서 안전관리계획 작성 가이드 및 양식 등 제작, 배포하여 대상 공간 지원

• 서울문화재단 위험성평가 추진

재단 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 및 사업(축제, 전시 등) 수행 전 위험요소를 선제 발굴하고 감소대책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예방

- 시설 및 사업 진행 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 해당 위험요인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의 빈도 및 중대성 판단
-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중대재해방지 모니터링 신규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재해관리 범위 확장으로 시설점검 위주의 '시민안전 모니터링' 외 시민대상 행사사업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방지 모니터링' 운영

- 기존 모니터링 운영 결과 토대로 중대재해방지 모니터링 사전 준비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공연장 안전관리자 등 실무자 위주 모니터링단 구성
- 재단 내 시민 대상 사업행사 계획 절차 검토 및 현장 모니터링으로 위험요소 발굴
- 위험요소 감소대책 추진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한 행사관리 실현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서울문화재단은 행복하고 안전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예술가)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 예술가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문화예술활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 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05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2022. 7.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재단 시설 이용자의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 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관계수급인 근로자"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수리·정비·보수 등의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 근로자를 말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관리를 위하여년 12월말 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 재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문서화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재단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제5조
(안전보건경영방침)

제6조
(관계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재단(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점검
-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재단(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계수급인 사업장은 재단이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수급인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재단이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관계수급인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⑥ 관계수급인의 평가 및 점검 등 기타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
(안전·보건조직)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 총괄조직을 둘 수 있으며, 총괄조직이 없는 경우 안전보건 담당부서를 두어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총괄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총괄조직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기·소방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를 둘 수 있다.

③ 재단은 2항의 직책의 선임·지정서를 「별지서식 제1호」 및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④ 재단은 2항의 조직·직책에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및 개입할 사유가 발생시 14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양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2(제34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에 따라 재단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작성 및 공시
 3. 그 밖에 재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재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제9조
(관리감독자)**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재단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재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은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정·부·실무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전문기관)**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3(제41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및 제44호 공공행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1천명 미만 시 1명 이상)에 따라 재단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재단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재단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자격 근로자가 없거나 유자격 근로자가 있더라도 필요 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재단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 ④ 재단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재단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재단은 재단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자격 근로자가 없거나 유자격 근로자가 있더라도 필요 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재단은 보건관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이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보건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9(제21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시)에 따라 재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분하여 같은 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장
 - 나. 노동조합의 장이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9명 이내
 2. 사용자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나.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제1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한정한다)
 -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한 실, 본부, 단, 부서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9명 이내
- ③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운영)**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안전보건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재단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① 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매분기(3개월)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 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서울문화재단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재단의 대표이사과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 ⑦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재단 내 방송, 재단 사내게시판
 2. 자체 정기 회의
 3. 기타 방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
(안전·보건교육)**

-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 ② 안전보건교육 담당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사내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15조
(정기안전·보건교육)**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재단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안전·보건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② 정기교육은 부서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전 근로자 집합교육은 재단 실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 ③ 제1항의 정기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제16조
(신규 채용자 교육)**

- ① 재단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② 신규 채용자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제17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① 재단은 재단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업무인수인계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인수인계에는 건물 및 시설 등의 작업순서,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시설의 작업유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8조
(특별안전·보건 교육)**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따라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는 배치 전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제19조
(관리감독자 교육)**

-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신규 채용자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특별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기교육은 교재, 강사 확보 상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직무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강사)**

- 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할 수 있다.
- 1.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 ① 안전보건교육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교육일시 및 장소
 - 2. 교육담당자
 - 3. 교육과정 및 내용
 -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안전보건교육 담당부서는 교육 관계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3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24조
(안전검사)**

-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재단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 ①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6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 ① 재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재단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③ 재단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7조
(작업중지)**

- ① 재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재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재단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재단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과 관계수급인은 현장을 확인하여 작업 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행해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안전표지 작성 및 게시)**

- ① 재단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익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7, 8, 9를 따른다.
-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 ③ 안전표지는 소관부서장 책임 하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 ① 재단은 근로자 및 재단 시설 이용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재단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1. 기계 기구 장치의 1.·청소·정비 및 안전장치 부속상태
 -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제30조
(교통재해 예방)**

- ① 재단 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② 재단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등)**

- ①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화기 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④ 재단 내 행해지는 작업 중 위험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로 할 수 없는 작업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정하며 관리감독자는 당해 근로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상조치계획)**

- ① 재단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 5. 비상시 대피절차
-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 9. 비상대피 후의 전 근로자가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④ 비상조치계획은 재단의 재난·방재 등 조치계획과 준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33조
(피난 및 대응훈련)**

- ① 재단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34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 ① 재단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재단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5조
(근로자 건강진단)**

- ① 직원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재단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담당자가 지시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일반 정기 건강진단은 매년 재단이 지정하는 월에 실시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질병 등에 걸린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 ④ 제3항의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한다.
- 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무시간의 단축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 ⑥ 재단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 ① 재단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 ⑤ 해당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안전보건 보호구)**

- ① 재단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 : 방진마스크
 -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재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이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재단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8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⑥ 재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재단은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안전·보건에 저해함이 없어야 한다.
-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상화학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단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4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2. 유해성위험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0조
(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재단은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해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재단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기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운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재단은 중대재해,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재단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재단은 임신 중인 직원, 장애인 및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해당자가 요청 시에는 보다 경미한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재단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재단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내지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4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① 재단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⑤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⑦ 사고발생 시 최초 발견자 및 목격자의 긴급조치 등 처리절차에 관하여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 현장조치매뉴얼」에 따른다.

제45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 및 유관부서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 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46조 (재해발생 시 현황분석 및 대책수립)

- ①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정기적으로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7조

- ① 재단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관리)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0호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③ 재단은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때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의사항 등,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위험성평가 교육)

재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 목적, 평가 방법, 평가절차, 적용사례 등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재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① 재단은 재단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51조 (위험성평가 주기)

-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 1. 재단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산업재해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52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 ① 재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5. 그 밖에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한다.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각 평가의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3조
(위험성평가 결과의 제출)**

재단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
(안전보건 의견청취제도)**

- ① 재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재단에서 도급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업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 또는 재단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징계)**

- ① 재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문화재단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최소 5년 이상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문서보존연한)**

**제57조
(변경절차)**

-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재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
(준수)**

- ① 재단의 대표이사외 모든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재단의 정령정돈에 전력하고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독금지 작업의 분류표

No.	작업명	2인 1조 작업	신규근로자 단독작업금지	비고 (안전작업허가)
1	고소작업(대)	○	○	○
2	화기작업(영접)	○	○	○
3	정전작업	○	○	○
4	증장비작업	○	○	○
5	굴착작업	○	○	○
6	방사선작업	○	○	○
7	밀폐공간작업	○	○	○
8	건물외벽 청소 (고소작업)	○	○	○
9	이상기후 외부 작업 (폭염, 한파 등)	○	○	
10	중량물(인력운반) 취급 작업	○		
11	조경작업(예초기)		○	
12	유해물질 취급작업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전화번호	
		총 명(남 명/여 / 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관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 · 월 · 일			
전담 · 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관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 · 월 · 일			
전담 · 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관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리감독자(정·부·실무) 지정서(안)

선임자	소속	업무범위 (정 / 부 / 실무)
	직급	
	성명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귀하

공지사항
1. 작성한 지정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원본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발행일 초판_2021. 12. 31.
2판_2023. 04. 20.
기획 초판_ 백성운_시설안전팀장, 김도균_시설안전팀, 이주형_시설안전팀, 전덕재_시설안전팀
2판_ 김도균_시설안전팀장, 이혜선_시설안전팀, 노희중_시설안전팀
편집디자인 더블유프로젝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
현장조치
매뉴얼**
안전보건관리규정집